

의안번호	2216433
의 퇴 인	복기왕의원
회 답 일	2026. 4. 2.
추계번호	26C0594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환경 개선사업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1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 판매시설 설치 2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3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 실시 4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13조(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)	현행 조사에 식품사막지역의 식품등 구입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를 포함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(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환경 개선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3조(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)	

2. 상세 사유

- 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환경 개선사업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1조의2)
 - 개정안에 따라 식품사막지역에 대한 식품등 구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,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질병관리청 문의 결과 안 제11조의2와 관련한 유사사례 사업 실시 내역이 없고, 현시점에서 예산반영 여부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식품사막지역의 식품등 구입 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추가(안 제13조)
 - 개정안에 따라 조사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으나, 조사방법 및 내용, 조사대상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조사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, 음주,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비만, 고혈압, 당뇨병, 구강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유병 현황 및 영양섭취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·영양수준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고, 2026년 기준 46억원의 예산이 편성¹⁾되었음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1) - 산출: 검진(임상검사 포함), 표본설계, 가구원조사, 질관리, 자료분석 등(32억원), 현장조사, 검진차량운영 등(14억원)
- 조사운영: 조사기간(연중), 조사인력(36명), 조사방법(표본조사, 현장조사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